|  |  |  |
| --- | --- | --- |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66호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지금 공표하며 공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張茅)  2014년 7월 3일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2003년 4월 17일 공상행정관리총국 제5령으로 발표되어 2014년 7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66호령으로 개정되었음.)  **제1조** 유명상표의 인정 업무를 규율하고 유명상표 소유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유명상표라 함은 중국에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는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상표가 표시된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전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전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과정에 관련된 판매자와 기타 관련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등록 심사, 상표분쟁 처리 및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안건 심사·처리의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제4조** 유명상표의 인정은 개별적 인정과 수동적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유명상표 보호 신청서 및 그가 보유한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요건 해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상표 등록출원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 안건 및 등록상표 무효 선고를 신청 안건의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유명상표 보호 신청서 및 그가 보유한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요건 해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유명상표 보호와 연관된 상표법 위반 사건은 시(지구(地區), 주(州))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를 신청한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 시(지구(地區), 주(州))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건을 신고함과 더불어 유명상표 보호 신청서 및 그가 보유한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요건 해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하는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 있다.  ① 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상표 사용, 등록의 역사와 범위 등 당해 상표의 연속 사용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비등록상표의 경우 상표 연속 사용기간이 5년 이상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거나 상표 연속 사용기간이 5년 이상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여야 함.  ③ 지난 3년간 이루어진 광고·홍보·판촉활동의 방식, 지역범위, 홍보매체 유형 및 광고 투입량 등 당해 상표에 대한 여하한 홍보활동의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④ 당해 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⑤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지난 3년간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순이익, 납세액, 판매구역 등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전항에서 '3년', '5년'이라 함은 당해 상표에 대한 상표 이의 신청일, 상표 등록 무효 청구일 전의 3년, 5년을 지칭하며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유명상표 보호 청구일 전의 3년, 5년을 지칭한다.  **제10조** 당사자가 본 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유명상표 보호 신청에 대해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35조, 제37조, 제45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적시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당사자가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를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적시에 검토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을 결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유명상표 보호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가 상표법 제13조·제14조, 실시조례 제3조 및 본 규정 제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초보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한다. 초보심사 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입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명상표 인정에 관한 지시 요청 및 안건 자료 부본을 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초보심사 결과 요건 불충족이 확인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적시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구역 내의 시(지구(地區), 주(州))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자료가 상표법 제13조·제14조, 실시조례 제3조 및 본 규정 제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여부에 대해 검토 및 심사한다. 심사 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유명상표 인정 자료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명상표 인정에 관한 지시 요청 및 안건 자료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요건 불충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안건 자료를 입건기관으로 반송하여 입건기관이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적시 처리한다.  **제13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유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 상표법 제14조 제1항 및 본 규정 제9조에 열거한 각 항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유명상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사실확인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상표국은 성(자치구, 직할시) 공사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관련 자료 심사 결과 유명상표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부서에 유명상표 인정 비준을 통보해야 한다.  입건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국으로부터 유명상표 인정 비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행정처벌결정서 부본을 소재지역의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결정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처리경과 및 행정처벌결정서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권리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표법 위반 행위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적시에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6조** 상표등록 심사, 상표분쟁 처리 및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표가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보호받았던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유명상표 보호 범위가 과거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았던 범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의 유명성에 대해 이의가 없거나 유명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그 이유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 상표법 위반 사건 입건부서는 해당 보호기록과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유명상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 조작 또는 허위 증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유명상표 보호를 사취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유명상표 인정을 철회하고 유명상표 인정 지시를 요청한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철회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유명상표 인정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심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규정 제13조 제2항의 협조 또는 사실확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규정 제14조 제2항의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기한 또는 사건처리경과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직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제19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명상표 인정 업무 감독·검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해야 한다.  **제20조**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도모 행위를 행하거나 유명상표 인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규정 위반, 뇌물 수수, 부정당 이익을 도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공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년 4월 17일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표한 <유명상표 인전 및 보호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6号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已经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  局长 张茅  2014年7月3日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2003年4月1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５号发布 根据2014年7月3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6号修订）  **第一条** 为规范驰名商标认定工作，保护驰名商标持有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以下简称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以下简称实施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驰名商标是在中国为相关公众所熟知的商标。  　　相关公众包括与使用商标所标示的某类商品或者服务有关的消费者，生产前述商品或者提供服务的其他经营者以及经销渠道中所涉及的销售者和相关人员等。  **第三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根据当事人请求和审查、处理案件的需要，负责在商标注册审查、商标争议处理和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商标违法案件过程中认定和保护驰名商标。  **第四条** 驰名商标认定遵循个案认定、被动保护的原则。  **第五条** 当事人依照商标法第三十三条规定向商标局提出异议，并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可以向商标局提出驰名商标保护的书面请求并提交其商标构成驰名商标的证据材料。  **第六条** 当事人在商标不予注册复审案件和请求无效宣告案件中，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可以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驰名商标保护的书面请求并提交其商标构成驰名商标的证据材料。  **第七条** 涉及驰名商标保护的商标违法案件由市（地、州）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管辖。当事人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商标违法行为，并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可以向违法行为发生地的市（地、州）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投诉，并提出驰名商标保护的书面请求，提交证明其商标构成驰名商标的证据材料。  **第八条** 当事人请求驰名商标保护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并对事实及所提交的证据材料的真实性负责。  **第九条** 以下材料可以作为证明符合商标法第十四条第一款规定的证据材料：  　　（一）证明相关公众对该商标知晓程度的材料。  　　（二）证明该商标使用持续时间的材料，如该商标使用、注册的历史和范围的材料。该商标为未注册商标的，应当提供证明其使用持续时间不少于五年的材料。该商标为注册商标的，应当提供证明其注册时间不少于三年或者持续使用时间不少于五年的材料。  　　（三）证明该商标的任何宣传工作的持续时间、程度和地理范围的材料，如近三年广告宣传和促销活动的方式、地域范围、宣传媒体的种类以及广告投放量等材料。  　　（四）证明该商标曾在中国或者其他国家和地区作为驰名商标受保护的材料。  　　（五）证明该商标驰名的其他证据材料，如使用该商标的主要商品在近三年的销售收入、市场占有率、净利润、纳税额、销售区域等材料。  　　前款所称“三年”、“五年”，是指被提出异议的商标注册申请日期、被提出无效宣告请求的商标注册申请日期之前的三年、五年，以及在查处商标违法案件中提出驰名商标保护请求日期之前的三年、五年。  **第十条** 当事人依照本规定第五条、第六条规定提出驰名商标保护请求的，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应当在商标法第三十五条、第三十七条、第四十五条规定的期限内及时作出处理。  **第十一条** 当事人依照本规定第七条规定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商标违法行为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投诉材料予以核查，依照《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处罚程序规定》的有关规定决定是否立案。决定立案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当事人提交的驰名商标保护请求及相关证据材料是否符合商标法第十三条、第十四条、实施条例第三条和本规定第九条规定进行初步核实和审查。经初步核查符合规定的，应当自立案之日起三十日内将驰名商标认定请示、案件材料副本一并报送上级工商行政管理部门。经审查不符合规定的，应当依照《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处罚程序规定》的规定及时作出处理。  **第十二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本辖区内市（地、州）级工商行政管理部门报送的驰名商标认定相关材料是否符合商标法第十三条、第十四条、实施条例第三条和本规定第九条规定进行核实和审查。经核查符合规定的，应当自收到驰名商标认定相关材料之日起三十日内，将驰名商标认定请示、案件材料副本一并报送商标局。经审查不符合规定的，应当将有关材料退回原立案机关，由其依照《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处罚程序规定》的规定及时作出处理。  **第十三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在认定驰名商标时，应当综合考虑商标法第十四条第一款和本规定第九条所列各项因素，但不以满足全部因素为前提。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在认定驰名商标时，需要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核实有关情况的，相关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予以协助。  **第十四条** 商标局经对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报送的驰名商标认定相关材料进行审查，认定构成驰名商标的，应当向报送请示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作出批复。  　　立案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商标局作出认定批复后六十日内依法予以处理，并将行政处罚决定书抄报所在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收到抄报的行政处罚决定书之日起三十日内将案件处理情况及行政处罚决定书副本报送商标局。  **第十五条** 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在商标注册和管理工作中应当加强对驰名商标的保护，维护权利人和消费者合法权益。商标违法行为涉嫌犯罪的，应当将案件及时移送司法机关。  **第十六条** 商标注册审查、商标争议处理和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商标违法案件过程中，当事人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时，可以提供该商标曾在我国作为驰名商标受保护的记录。  　　当事人请求驰名商标保护的范围与已被作为驰名商标予以保护的范围基本相同，且对方当事人对该商标驰名无异议，或者虽有异议，但异议理由和提供的证据明显不足以支持该异议的，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商标违法案件立案部门可以根据该保护记录，结合相关证据，给予该商标驰名商标保护。  **第十七条** 在商标违法案件中，当事人通过弄虚作假或者提供虚假证据材料等不正当手段骗取驰名商标保护的，由商标局撤销对涉案商标已作出的认定，并通知报送驰名商标认定请示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  **第十八条** 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违反本规定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未履行对驰名商标认定相关材料进行核实和审查职责，或者违反本规定第十三条第二款规定未予以协助或者未履行核实职责，或者违反本规定第十四条第二款规定逾期未对商标违法案件作出处理或者逾期未报送处理情况的，由上一级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通报，并责令其整改。  **第十九条** 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驰名商标认定工作监督检查制度。  **第二十条** 参与驰名商标认定与保护相关工作的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违法办理驰名商标认定有关事项，收受当事人财物，牟取不正当利益的，依照有关规定予以处理。  **第二十一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2003年4月1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公布的《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同时废止。 |